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쇼핑물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기준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쇼핑물은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폐쇄되며 이후 4 단계에 도달하고 다음 지침을 준수하는 지역에서 쇼핑물은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가능한 소매 공간이 100,000 평방 피트 이상인 소매 쇼핑물의 실내 공용 부분은 4 단계 지역의 쇼핑물이 재개장 할 수 있는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폐쇄해야 야합니다. 단, 자체 외부 출입구가 없는 매장은 1 단계 및 2 단계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해 일반 쇼핑물 입구 또는 인근에서 고객에게 구매 상품을 제공하며 운영을 할 수 있고 일반 쇼핑물 입구와 별도로 자체 외부 출입구가 있는 모든 매장(예: 스트립 몰, 앵커 임차인)은 1 단계의 커브사이드 및 매장 내 픽업과 2 단계의 모든 매장 내 소매 활동을 위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목적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쇼핑물에 대한 임시 지침은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해 쇼핑물의 소유주/소유자/운영자 및 직원, 하청계약자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운영이 허용된 모든 실내, 스트립 및 아웃렛 쇼핑물에 적용됩니다. 본 지침은 해당 쇼핑물에 입점한 레스토랑이나 기타 음식 서비스, 영화관, 렌탈 상품 판매점 또는 미용실, 네일 살롱, 스파, 문신 가게, 레이저 제모 또는 전기 분해 요법 등 개인 관리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쇼핑물 내 소매 매장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필수 및 2 단계 소매 사업체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쇼핑물 내 레스토랑과 기타 음식 서비스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쇼핑물 내 영화관은 해당 목적으로 공표된 지침을 따라야합니다(공표 당시 영화관은 개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쇼핑물 내 개인 관리 서비스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쇼핑물 내의 다른 모든 사업체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업계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모든 쇼핑물 소유주/소유자/운영자는 추가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쇼핑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모든 쇼핑물 운영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할 책임을 집니다.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공포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공포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대해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공포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34호를 공포하여, 사업체 운영자/소유자에게 차량에 따라 얼굴을 가리개 또는 마스크로 가리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Cuomo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역량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6월 12일에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Cuomo 주지사는 주의 여러 지역에서 6월 26일부터 재개 4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사업체는 반드시 DOH가 공포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책임지는 쇼핑물 운영 기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쇼핑물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쇼핑몰에 적용됩니다. 쇼핑몰의 소유주/운영자 또는 소유주/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쇼핑몰의 소유주/운영자 또는 지정인은 모든 공용 영역과 관련하여 기준을 준수할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주/운영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임대 공간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단, 임차인과 소유주/운영자가 해당 책임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예: 공동 선별검사 프로토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직원"에 대한 언급은 (1) 직원, 하청계약자 및 공급 업체를 포함하고 (2) "직원 및/또는 방문자"에 대한 언급은 쇼핑몰의 소유주/운영자 그리고 직원 및/또는 방문자를 나타냅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본 지침에 따른 관행 구현에 대해 쇼핑몰 내 공간을 점유하는 임차인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해당 단체와 직원, 하청계약자 및 방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 두기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이 점유 인증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영역의 최대 점유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고객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관계인 당사자/가구/가족이 아닌 개인들은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경우 허용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만 쇼핑몰 및 쇼핑몰 내 사업체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고객은 2 세 이상이며, 이러한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안전 및 핵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예: 금전 등록기 운영, 상품 이동 및 적재 등) 직원과 고객이 항상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고객과 접촉할 때마다(예: 고객에게 정보 제공, 금전 등록기에 입금, 제품 포장 및 전달 등)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직원이 다른 사람과 6 피트 이내에 있을 때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에 입장하는 고객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소재 안면 가리개 및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업계 기준 하에서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기타 PPE 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후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하거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또는 공간 사이의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페이스 커버 대신 플라스틱 차단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물리적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장벽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예: 금전 등록기에서의 플렉시 글라스 또는 칸막이) 업무 중인 직원과 매장을 둘러보는 고객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 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쇼핑물 배치를 수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 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2 세 이상인 고객에 대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쇼핑물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입장을 거부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또는 소모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픽업 및/또는 배송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직원과 고객이 일하고 쇼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방 통행로 또는 복도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행량 흐름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화장실, 창고)을 한 번에 두 명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에서 모든 개인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한 명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점유 인원 수는 해당 공간의 최대 점유 인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최대한 환기(예: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 둔 상태)하여 환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지불 옵션이나 선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 카드, 리워드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취급을 최소화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통로와 복도에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용 공간 및 영역(예: 출퇴근 시간 기록대, 건강 검진 스테이션, 쇼핑물 내 키오스크, 휴게실)에서 6 피트의 거리두기를 알리는 표지판과 거리 표시기를 게시하여 고객의 양방향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일방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및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영역(예: 출퇴근 시간 기록대, 건강 선별검사대, 휴게실, 금전 등록기 영역, 상품 근처, 통로 내)에 6 피트의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DOH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쇼핑물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가 보건부의 표지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작업장 또는 업무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맞춤형 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직원과 고객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아플 때 집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적절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알립니다.
 - 개인이 코로나 19 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의 대면 모임(예: 직원 회의, 창고)을 제한하고 질병관리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방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직원 대면 회의를 열어야 하며 직원이 서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예: 의자에 앉는 경우 의자 사이 간격을 띄우고 한 의자씩 거르고 앉기) 적절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허용하지 않는 비필수적 편의시설 및 공용 구역을 폐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개장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장비 옆에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비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소 등 좁은 공간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표지판 및 시스템(예: 사용 중 표시)을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C. 작업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영업 시간 조정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현장 인력 줄이기
 - 근무 교대시간 설계하기(예: A/B 팀, 출발/도착 시차),
 - 가능한 경우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동시에 제품과 접촉하는 인원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칭 작업(한 직원이 모든 포장을 담당하고 별도의 직원이 배달을 담당하는 등). 및/또는
 - 고객에게 구매 물품을 직접 포장하도록 권고(의무 사항은 아님).
- 책임 당사자는 개선된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위해 필요에 따라 소매 운영 시간 조정.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 인원 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쇼핑물 내 통행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 책임자는 통행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그룹이 사회적 모임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직원 또는 보안 요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있는 당사자는 고객이 모이고 배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모이고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직원 고용을 포함하여 충분한 직원 또는 보안 요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하고 배송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표지나 마커의 사용을 포함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쇼핑물과 사업체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상품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배송 진행 과정 동안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PPE 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을 나르기(예: 배송 운전자) 전후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예: 물건을 신기 전 손을 소독하고 모든 짐을 실은 후 다시 소독하기).
- 책임 당사자는 내부 매장을 위한 커브사이드 픽업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있는 당사자는 발레 파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 2020 년 8 월 20 일부터 책임 당사자는 제한된 푸드 코트 좌석 공간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좌석 공간과 푸드 코트 내에 위치한 식품 서비스 시설은 좌석이 있는 테이블 간 필수적인 거리두기, 고객 당사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점유 인원 수 제한 등 DOH 의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편의 시설을 폐쇄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 위에 명시된 푸드 코트 좌석을 제외한 쇼핑물 내 공용 좌석 구역 폐쇄.
 - 셀프 서비스 바와 샘플러 폐쇄.
 - 음수대 폐쇄.

II. 장소

A. 공기 여과 및 빌딩 시스템

- 800,000 평방 피트가 넘는 쇼핑몰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건물 HVAC 시스템 여과가 현재 설치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되는 최고 등급 여과 상태를 최소 MERV-13 또는 업계 동급 이상(예: HEPA)으로 충족하고, 유자격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ASHRAE 인증 전문가, 유자격 리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라이선스 전문 건축 엔지니어가 인증하고 문서화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또한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15 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프로토콜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환기율 및 실외 환기 증대
 - 시스템을 장시간 동안 실행하도록 유지(예: 가능한 경우 연중 무휴)
 - 타당한 경우 수요 제어 환기를 비활성화하지만 신선한 공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시스템(예: 대회의실 또는 소회의실)

- 가능한 한 재순환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실외 공기 댐퍼를 엄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고 배치된 자외선 살균 조사(UVGI) 장치 설치 고려
 - 바이패스를 제한하기 위해 필터 가장자리 밀봉
 - 시스템과 필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필터가 적절하게 설치, 유지관리가 적절하고 서비스 수명이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
- **800,000** 평방 피트 이상의 쇼핑몰이 **MERV-13** 이상의 건물 HVAC 시스템 여과 등급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유자격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ASHRAE** 인증 전문가, 유자격 리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라이선스 전문 건축 엔지니어가 현재 설치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이 해당 높은 수준의 여과(예: **MERV-13** 이상)가 설치된 경우에도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전에 제공할 수 있었던 최소 수준의 난방 및 냉방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인증하고 문서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프로토콜로 **MERV-11** 또는 **MERV-12**의 더 낮은 여과 등급에서 운영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문서를 **DOH**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당사자는 건물 HVAC 시스템 여과 등급을 최소 **MERV-11**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또한 **MERV-13** 이상의 여과 등급을 충족할 수 없는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환기율 및 실외 환기 증대
 - 시스템을 장시간 동안 실행하도록 유지(예: 가능한 경우 연중 무휴)
 - 타당한 경우 수요 제어 환기를 비활성화하지만 신선한 공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시스템(예: 대회의실 또는 소회의실)
 - 가능한 한 재순환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실외 공기 댐퍼를 엄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고 배치된 자외선 살균 조사(UVGI) 장치 설치 고려
 - 바이패스를 제한하기 위해 필터 가장자리 밀봉
 - 시스템과 필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필터가 적절하게 설치, 유지관리가 적절하고 서비스 수명이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
 - **800,000** 평방 피트가 넘는 쇼핑몰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건물 HVAC 시스템 여과가 현재 설치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되는 최고 등급 여과 상태를 최소 **MERV-11** 또는 업계 등급 이상(예: **HEPA**)으로 충족하고, 유자격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ASHRAE** 인증 전문가, 유자격 리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라이선스 전문 건축 엔지니어가 인증하고 문서화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또한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특히 **MERV-13** 등급 이하의 HVAC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물 및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프로토콜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환기율 및 실외 환기 증대
 - 시스템을 장시간 동안 실행하도록 유지(예: 가능한 경우 연중 무휴)
 - 타당한 경우 수요 제어 환기를 비활성화하지만 신선한 공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시스템(예: 대회의실 또는 소회의실)
 - 가능한 한 재순환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실외 공기 댐퍼를 엄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고 배치된 자외선 살균 조사(UVGI) 장치 설치 고려
 - 바이패스를 제한하기 위해 필터 가장자리 밀봉
 - 시스템과 필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필터가 적절하게 설치, 유지관리가 적절하고 서비스 수명이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
- 거주자가 완전히 폐쇄되었던 건물로 복귀하기 전에 책임 당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복귀 전 점검, 작업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기계 시스템, 수도 시스템, 엘리베이터 및 HVAC 시스템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비가 비활성화된 기간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기계(예: 밸브 및 스위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시스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장기간 작동 정지 후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려면 특정 시스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작동 정지 기간 및 검사 상태에 따라 이러한 각 항목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하고 해당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최소 24 시간 동안 메이크업/외부 공기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신선한 공기로 건물을 환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예: 건물 환기 후) 공기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냉각탑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었는지, 화학 및 미생물 수준이 모든 폐쇄 상수도 시스템 및/또는 상수도 기능 관련 정의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고인 물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배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건물 상수도 관리 계획에 따라 냉수 및 온수 시스템을 플러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건물 상수도 시스템 플러시 후 물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완전히 폐쇄되었던 건물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건물을 재개장하기 전에 모든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작동이 복원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 또는 동료로부터 6 피트 이내에 있을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예: 구매 입력, 상품 포장 및 전달, 보안 상호작용).
-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고객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쇼핑물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2 세 이상이고 그러한 가리개 착용을 의학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작업장 활동에 필요한 PPE 외에,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입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되는 해당 안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이 교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면 가리개,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PPE) 비축량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킥 컷,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 사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가 통상적으로 특정 소매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의 추가 보호 안면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의 업무 특성상 더 보호가 잘 되는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OSHA 해당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도구, 레지스터 및 차량과 같은 장비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이 공유 물건 및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용도에 적합하거나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원이 접촉 후 손 위생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품을 취급할 때 장갑을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C.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퍼센트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쇼핑물 전체에 비치해야 합니다. 쇼핑물의 출입 지점, 정보 키오스크와 같은 편리한 위치, 각 매장의 고객 출입구, 금전 등록기 또는 결제 터미널에 비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자주 만지는 표면에 사용하기 적절한 세척 및 소독 제품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해당 표면 사용 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제품을 사용한 후 손 위생을 수행하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쇼핑물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영역과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대해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매일 두 번,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작업대를 바꿀 때를 포함하여 등재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중간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자동 판매기, 손잡이, 욕실, 문 손잡이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개인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기다리십시오. 24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 및 소독한 후, 재개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 물체(예: 바스켓, 결제 장치) 취급, 구역(예: 픽업 구역) 및/또는 표면(예: 문, 터치스크린 디렉토리)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구역 및 물체를 최소한 매일 2회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식음료를 공유(예: 뷔페식 식사)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하며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해야 하며, 점심 식사 중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D.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쇼핑물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처음 재개장 시 변화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수, 시간, 서비스 제공 고객 수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에서 공표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이 포함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PPE 사용, 특히 6 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에 관한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도록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PPE)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쇼핑물 내부 및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III. 절차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가능한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일일 건강 선별 검사 관행을 구현해야 하지만, 그러한 선별 검사는 고객 및 배달 직원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이 직장에 보고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등)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조치는 직원들이 선별 결과가 나오기 전 서로 근접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선별은 최소한 모든 직원 및 방문객(고객 제외)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직원 또는 방문객이 다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 여부.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대한 양성 반응 여부.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증상 경험 여부.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CDC)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개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 설문과 더불어, 체온 검사는 미국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 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검사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을 쇼핑몰에 진입하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인원은 최소한 마스크 또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한 PPE 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페이스 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 19 에 대해 양성이거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작업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평가 및 검사를 위해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라는 지시와 함께 귀가시켜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결과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시간 또는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개인이 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책임 당사자 및 임차인은 책임 당사자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선별 검사하는 대체 선별 검사 계약에 동의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선별 검사 과정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건강 데이터(예: 개인의 특정 체온 데이터)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별 검사 과정과 관련하여 매일 유지되는 유일한 기록은 선별 검사를 받은 개인과 선별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 또는 방문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모두 계속해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 감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작업장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적절한 PPE 를 착용한 고객이나 비접촉식 수단을 통해 수행하는 배송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을 경우 접촉자를 확인하고 추적하여 알릴 수 있도록 일지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방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에 협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건강 검진을 완료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나 그것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선택권을 주어 정보를 일지에 기록하고 접촉자 추적 시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의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쇼핑몰에서 상호 작용한 직원, 방문자 또는 고객이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일지에 기록된 모든 직원의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하며,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시점 중 이른 시점부터 48 시간 전에 쇼핑몰에 입장한 방문객/고객(해당되는 경우)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연방 및 주 법과 규정에서 명시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및 지방 보건부는 감염 및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고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이동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한 적 있다는 알림을 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알림을 받는 사람은 알림을 받은 즉시 자신의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에 명시된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 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 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다음의 링크에서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 사항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